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2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이종배·엄태영·성일종

김형동・송석준・구자근

안철수 · 조승환 · 박대출

김희정 · 서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주말·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, 2021년 이른바 'LH직원 땅투기'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.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%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,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주말·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, 농지 거래 활 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 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).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"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"를 "농지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치유농업(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영위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6조제2항제2호"를 "제6조제2 항제2호·제3호의2"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·농지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치유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제2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농지 소유 제한) ① (생	제6조(농지 소유 제한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	
다. 다만, 소유 농지는 농업경	
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	
(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).	
1. •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고 <u>제</u>	3 <u>농지</u>
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	
<u>의 농지</u> 를 소유하는 경우	
<u><신 설></u>	3의2. 치유농업(「치유농업 연
	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
	<u>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</u>
	영위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
	<u>경우</u>
4. ~ 10. (생 략)	4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	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	2
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	

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 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•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 · 구 · 읍 ·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 다. 다만, 제6조제2항제2호 · 제 7호・제9호・제9호의2 또는 제 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 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 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~ ⑦ (생 략)

제10조(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) ① 농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(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

- <u>제6조제2항제2호·제3호의2</u>
,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세10조(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
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) ①

한다)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이 아닌 자, 그 밖에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의2. • 4의3. (생략)

5. ~ 7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지대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~ 5의2. (생 략) <u><신</u> 설>
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제6조제2항제3호의2에 따
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
재해·농지개량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
이 그 농지를 치유농업에 이
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
<u>장</u> 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
한 경우
<u>4의3.</u> · <u>4의4.</u> (현행 제4호의2
및 제4호의3과 같음)
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
대차) ①
<u>.</u>
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5의3.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
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치

	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
	<u>는 경우</u>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